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698호 2023. 3. 20.(월)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35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4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45

예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51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전략과장
-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 3.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편집위원회) ① (생략)	제5조(편집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보발행 내용과 관련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명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③ <u>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전략과장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3.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u>위원은 회의개최 사유발생 시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u>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p>⑧ <u>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⑧ <u>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u></p>
---	--

◆ 제안이유

효율적인 수영구보 발행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문성 강화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 국장 및 구의원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 (제5조제3항)
- 나. 위원의 임기를 2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조정 (제5조제4항)
- 다. 위원 수당 등 지급근거 명시 (제5조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보건소·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국, 행정

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기획전략과, 스마트도시과,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홍보 및 예산 편성·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정원, 법무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시티 및 드론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농·수산 및 공원·녹지·산림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보안·복무·직원후생·차량·직장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선거, 주민등록,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전에 관한 사항
5. 관광 및 해양스포츠에 관한 사항
6.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7. 공유재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8.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기록물,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 9. 세정기획,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 및 구호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관한 사항
- 3.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 4. 아동·여성·가정에 관한 사항
- 5.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6. 폐기물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7. 자원재활용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 8. 환경, 수질, 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
- 9.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안전관리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재난 예방·복구,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3. 교통 행정 및 안전,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 4. 주차행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 5. 광안리해변 및 수변에 관한 사항
- 6. 옥외광고물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 7. 건축 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8. 주택, 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9. 건설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10. 도로, 하천 및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지적·부동산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광안동)에 둔다.

제9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사회복지업무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신설된 가지번호 및 국별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 간소화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 (제1조)
- 나.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규정 (제2조)
- 다. 국의 설치, 국에 두는 과 및 국의 분장사무 규정 (제3조~제7조)
- 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장 및 소관사무 규정 (제8조~제10조)
- 마.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설치 및 동장 및 소관사무 규정 (제11조~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입법평가”란 현행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자치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입법업무 및 입법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등

제4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이하 “입법예고문”이라 한다)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되, 추가로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5. 공청회 개최 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예고의 의견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조례안의 비용추계)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조례를 입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0조(자치법규의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의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제11조(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구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입법평가

제12조(입법평가의 추진) ① 구청장은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평가를 위해 3년마다 입법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입법평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 2.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 변호사, 법관, 교수 등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평가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제외한다.

- 1. 구의 행정기구·기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 3.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
- 4.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관 조례

제16조(평가기준)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7조(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입법평가 결과에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종합결과보고서의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자치법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안이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내용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입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법제업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제3조)
- 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련 사항 (제4조~제9조)
- 다.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1조)
- 라.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 및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제1조~제3조)
-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
-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 라.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6조~제7조)
- 마.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비·시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영 제26조의4에 따라 운용하되 영 제26조의4제8호 중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 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 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해 수입계좌와 지출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3.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기금 사용계획
-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제9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을 사업자금으로 대여(이하 “대여자금”이라 한다)할 경우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당 2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 변경·중단·폐지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이자 차액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자활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10조제3항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율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대여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적립된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
금에서 자활계정으로 적립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 승계한다.

◆ 제안이유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의무적립 규정 반영을 위해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대상 기금이 아닌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존속기한(2023년 5월 1일) 전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활기금의 자원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 (제3조)
- 다. 기금운용심의 (제4조)
-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5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 바. 기금 지원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조)
- 사. 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제13조)
- 아.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의 폐지에 따른 사후 처리 절차 (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

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참여인원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참여자의 특성 및 재난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참여예정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5조)
-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제6조~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수욕장운영업무담당주사”를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4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u>문화관광과</u> 장이 되고, 서기는 <u>해수욕장운영업무담당주사</u> 가 된다.	제24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부서</u> <u>의 장</u> -----, ----- <u>해수욕장 운영 업</u> <u>무 담당계장</u> ------.

◆ 제안이유

2023. 1. 5.자 정원조정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협의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제2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시공, 구조 및 설비 분야에 대한 심의의결 권을 위임받은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

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또는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버스정류장
-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 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선정제외 대상) ①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고를 통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통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2조)
-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3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 (제4조)
- 라. 안전진단 대상 범위 (제5조)
- 마.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제6조)
- 바.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제7조)
- 사.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 (제8조)
- 아.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선정제외 대상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규 제1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에 대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절차 및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옷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및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음성 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 2.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생성된 영상·음성 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보안 장치를 말한다.
- 3. “관리책임자”란 휴대용 보호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사용부서”라 한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①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그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에 영상·음성 기록을 저장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녹음을 마친 영상·음성 기록은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에 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에 영상·음성 기록 저장 완료 시 담당공무원 PC에 저장된 자료는 즉시 삭제
4.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가 아닌 곳에 영상·음성 기록을 저장 금지
5.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에 저장된 영상·음성 기록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6. 관리책임자는 영상·음성 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에 저장 시 관리번호, 제목, 일시, 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 7.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보급하여 등록된 휴대용 보호장비 및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만 사용할 것
- 8. 휴대용 보호장비는 제6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사용을 마친 후 반납
- 9.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의 휴대용 보호장비에 저장된 상태 확인
- 2. 휴대용 보호장비의 상태 등 작동여부 확인

제6조(관리책임자 및 담당공무원 지정)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 1. 정 : 사용부서 부서장, 동장
- 2. 부 : 사용부서 주무계장, 행정사무장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관리한다.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등 보안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 및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 매체는 사용부서에서 등록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에 저장된 자료의 전송은 지정된 담당공무원 PC에서만 가능하며, 휴대용 보호장비 관련 시스템·장비 등을 구비하여 영상·음성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 변경 시 즉시 계정 정보를 변경하여 관리한다.
- ④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 등록 시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책임자 및 담당공무원만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 ⑤ 휴대용 보호장비 및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는 사용 부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⑥ 휴대용 보호장비 및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의 분실, 탈취 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및 민원여권과에 알려야 한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 운영 등) 영상·음성 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 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제9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음성 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

조를 준용한다.

제10조(영상·음성 기록 증거물 작성)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음성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영상기록 파일을 CD 등의 형태로 제작한 후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어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및 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가. 예규의 목적, 정의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1조~제3조)
- 나.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6조)
- 다. 휴대용 보호장비 등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 보조 저장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8조)
- 라. 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및 영상·음성 기록 증거물 작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조)
- 마.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